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586

발의연월일: 2021. 9. 15.

발 의 자:이채익・김예지・김상훈

서병수・박성민・박대수

송석준·김용판·이 용
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체검사 또 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등 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병역판정 검사 후 귀가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병역의무이행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의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역판 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제6항제4호 신설). 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부담 치료에 관한 적용례) 제75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(보상 및 치료) ① ~ ⑤	제75조(보상 및 치료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6
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	
나 국가・지방자치단체의 의료	
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	
치료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	
해당하는 사람은 「예비군법」	
제9조를 준용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
	사,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
	검사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
	로 이동중이거나 귀가 중에
	부상을 입은 사람